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근거 마련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01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관련 대위권 행사 및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절차 준용 등	3
2.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근거 마련	14
3. 변제금 납부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신설	2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4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임금채불액은 역대 최대액인 2조를 넘었으며, 2024년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7,242억 7백만원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대지급금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조한 환수율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또한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대하여 추

심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8조의3 신설),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관련 대위권 행사 및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절차 준용 등(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을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또한 개정안은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금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사업주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 <u>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장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에서 같다)가</u>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

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1)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관련 대위권 행사

현행 「근로기준법」은 ①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로서 하수급인²⁾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일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연대책임),³⁾⁴⁾

②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그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음(건설업에서의 임금채권 연대책임).⁵⁾

2) 도급계약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최초의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으로부터 수급을 받은 경우 하수급으로 볼 수 있음.

3)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단,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수급인으로, 직상수급인을 도급인으로 보고 있음.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한편,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면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⁶⁾ 사업주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직상수급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개정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가 사업주(직상 수급인 포함)에게 가지는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지급금의 회수 실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직상(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회수 대상에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대위권 행사가 불가한바, 두 법령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5년 10월 26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5년 10월 31일 정부에 이송되었음.

(2)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절차 준용 등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⁹⁾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하고 있음.

최근의 대지급금 환수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누적 회수율이 30.0%로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대지급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제2213262호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9)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때, 체불사업주의 재산 압류 등 보전절차를 조기에 신속 수행하기 곤란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 지급에 따라 얻게 되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①통지·독촉 등 국세체납처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에 관한 사항, ②법인의 합병·해산 등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 ③공동사업 관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부과, ④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전 징수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준용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준용되는 체납처분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제25조	· 연체금의 징수 근거, 연체금 산정 기간, 부가연체금 등
제26조의2	· 징수우선순위(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등 순)
제27조	·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서면통지 및 독촉, 연대채무자에 대한 독촉효력 인정 등)
제27조의2	· 납부기한 전 징수(국세·지방세 체납자, 강제집행을 받거나 법인 해산된 경우 등)
제28조	· 징수금의 체납처분(징수금 독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근거
제28조의2	· 법인 합병에 의한 납부의무 승계
제28조의3	·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 승계
제28조의4	· 연대납부의무(공동사업 관계자, 법인 분할 시 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5	·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민법」 준용(연대채무 관련 규정의 일부 준용)
제28조의7	· 국세기본법 준용(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담보제공 관련)

조문	내용
제29조	·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 사유
제32조	· 서류의 송달 관련 타 법 준용(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42조	· 시효 중단 - 제27조에 따른 통지, 독촉 -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교부청구(배당요구), 압류

일반 민사채권의 집행절차와 비교할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전처분을 위한 신청, 심리 및 결정 절차, 지급명령,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민사집행 절차와 국세체납처분 절차>

구 분	민사집행 절차	국세체납처분의 예
관 련 법 률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임금채권보장법, 국세징수법, 보험료징수법(준용규정) 등
업 무 내 용	① 대지급금 지급	① 대지급금 지급
	② 변제금 납부고지 (15일)	② 변제금 납부고지 (30일) - 납입고지 - 독촉
	③ 재산조사	③ 체납처분 승인 (7일) - 재산조사
	④ 재산 보전처분(가압류 등) (5일)	④ 재산 보전처분(압류) (1일)
	- 가압류신청서 접수(전자접수) - 가압류 결정(법원) - 가압류 통지서 송부(채무자)	- 압류조서(촉탁서) 작성·송부 * 촉탁과 동시 압류효력 발생 - 압류 통지서 송부(채무자) * 법원에 대한 신청, 심리, 결정 등의 절차 없음

	⑤ 집행권원 확보 (120일)	
	- 제소전 화해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소송수행(변론, 증거·증인 신청 등) - 사건 심리(법원) - 법원 판결 및 집행문 부여 등	*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절차 없음
	⑥ 강제환가 절차(강제집행) 이행 (150일)	⑤ 강제환가 절차(공매) 이행 (120일)
	- 강제집행 신청(법원) - 배당기일 참석(법원) - 배당금 수령 등	* (필요시) 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⑥ 변제금 수납	⑤ 변제금 수납
소 요 시 간	<290일> 강제집행이 유찰없이 진행될 경우 1회 유찰시마다 15일이상 추가 소요	<158일> 공매가 유찰없이 진행될 경우 1회 유찰시마다 10일이상 추가 소요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대지급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매년 축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력상실·재산도피 전에 신속·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수절차를 민사절차에서 국세채납처분 절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은 조기에 효율적인 대지급금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사업비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7,198
수지차 (A-B)		△ 30,761	△ 124,745	△ 103,538	△ 34,957	△ 175,050	△ 173,221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주1)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주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시 법원의 신청·결정 없이 행정기관이 직접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며, 체불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임채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이 필요하고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5년 10월 26일 동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

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5년 10월 31일 정부에 이송되었음.

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제2213262호

2.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대지급금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의 인적사항 및 변제금 미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개정안은 안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변제금미납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대지급금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그 인적사항 및 변제금 미납

제12조(채불 임금등의 확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채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변제금 미납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채불 임금등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근로복지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7. (생략)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 아.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present.

1. ~ 7. (현행과 같음)

7의2. 근로복지공단에-----

가. ~ 아. (현행과 같음)

7의3.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신 설>	7의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 ----- ----- -----근로복지공단----- ----- ----- ----- -----.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	--

나. 검토의견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의2¹¹⁾는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임금채권에 대한 특별 규정이나,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제재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¹²⁾

1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2024. 10. 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2.>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4. 10. 22.>

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2.>

[본조신설 2012. 2. 1.]

12) 「근로기준법 주해Ⅲ」, 노동법실무연구회

또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¹³⁾은 보험료 등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처럼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체불사업주·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등 관련 규정은 없음.

이에 개정안은 악의적으로 변제금 회수를 회피하는 미납사업주에

-
-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2. 12. 31.>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27.>
- ③ 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 1. 27.>
-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2. 30.]

대한 추심 강화의 목적으로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개정안은 미납사업주의 제재를 통한 변제금 회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의의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명단공개 대상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는 사업주를 설정하고 있어, 법인의 변제금 미납에 대한 간접적 추심 강화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명단공개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하는바 침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데, 안 제8조의3은 명단공개 요건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안 제8조의3제1항은 명단공개 핵심 사항인 공개 여부가 되는 변제금 미납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참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구체화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명단공개를 통한 변제금 미납 사업주 등에 대한 간접적 제재 효과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변제금 미납 사업주 중에는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폐업·도산 사업주가 상당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변제금 미납사업장 총 12.4만개소 중 소멸 사업장이 8.2만개소(66.1%), 사망·해산(파산 포함) 등의 사업장이 2.1만개소(16.8%)로 나타났음.¹⁴⁾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명단공개시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망·폐업·도산 사업주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 효과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4)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3. 변제금 납부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안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① (생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러한 개정안은 징수 회피목적을 가진 사업주 등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징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변제금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재산은닉에 대한 벌칙 신설과 관련하여, 재산은닉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이 납부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은 최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채납처분절차의 예에 따른 변제금 회수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채납처분면탈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채납처분 등의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등 주로 조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채납처분면탈에 관한 입법례]

「조세범 처벌법」

제7조(채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채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채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채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형법」 제327조¹⁵⁾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강제집행

15)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음. 판례에 따르면, 이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¹⁶⁾

이때, 판례는 반환대상 보조금에 대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舊보조금관리법과 관련하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음.¹⁷⁾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상의 관련된 입법례와 함께 ①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안 제8조의2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절차의 예에 따른 변제금 회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 임금채권이 조세채권으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조세채권 외의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벌칙의 입법례를 현행 법체계에서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은닉

16) 대법원 1984.3.13. 선고 84도18 판결 등

17)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5693 판결 강제집행면탈

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재산 목록의 제출 거부나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현행법 제13조¹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법제30조제1항제1호의2¹⁹⁾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때 개정안에 따른 경우,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가 병과되는 체계인바,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제재규정의 방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현재 부동산 사해행위가 확인된

18)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07. 12. 27.>]

19)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삭제 <2015. 1. 20.>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복시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동산에 대한 은닉행위는 확인이 곤란하여,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사업주 재산은닉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열람 권한 신설 등 보완 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사업주의 허위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와 형벌 중 적합한 제재방안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
